〈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뽕사부]

정보공개서

[(주)뽕사부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0047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0.04.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3.06.27

[주식회사 뽕사부컴퍼니]

< 주 의 사 항 >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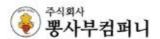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칭함)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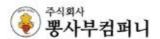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7길 58, 313호(역삼동) 대표번호 Tel: 02-569-6660(가맹사업부 동일) 이메일: bbongsabu@naver.com I 홈페이지: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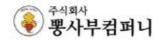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http://franchise.ftc.go.kr)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qo.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 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일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뽕사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7길 58, 313호(역심					역삼동)	
㈜뽕사부컴퍼니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MS시구습피니	2020.02.20	2020.02.28.		김영삼	02-569-6660		02-569-6661	
	법인등록번호	110111-73972	254	사업자등	록번호	55	8-88-01734	

2.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기어보고 지수니		서울특별시 강	남구 논현로67길 58, 3	13호(역삼동)			
대표이사	김영삼/주식회사 뽕사부컴퍼니	뽕사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영삼	02-569-6660	02-569-666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7107		서울특별시 강	남구 논현로67길 58, 3	 13호(역삼동)			
감사	청상용/주식회사 뽕사부컴퍼니	뽕사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증시구십띄니		김영삼	02-569-6660	02-569-6661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 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뽕사부	
상 호	뽕사부 OO점	보통 상호와 지역명칭을 함께 설정하여 지정함
상표(서비스표)	뽕사부	출원 : 4120140012746 등록 : 4103076120000
그밖의 서비스표	ANOMO MARIO	^{주식회사} 뽕사부컴퍼니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황에 관한 정보

1) 연도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VAT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41,013	74,099	266,913	835,007	172,723	160,268
2022년	931,276	503,590	427,685	4,682,141	168,434	160,771
2023년	914,219	399,410	514,809	4,188,294	106,318	87,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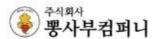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원인역구	이듬	한 역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영삼	대표이사	2020.02.20.~현재	㈜뽕사부컴퍼니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관련임원	정상용	감사	2020.02.20.~현재	㈜뽕사부컴퍼니 감사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 (명)	지의스/명\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 (명)	
2023년 12월 31일	2	-	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뽕사부	상표권	2014. 12. 19.	출원 : 4120140012746 등록 : 4103076120000	김영삼	2024.12.19.

-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상표권자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았습니다.
-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Π. 가맹본부의 [뽕사부]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21년 3월 3일

2. 해당 가맹사업『뽕사부』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뽕사부컴퍼니	뽕사부	김영삼	2021.03 ~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7길 58, 313호(역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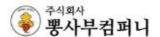
3. 『뽕사부』 업종

영업표지	업	종
뽕사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5시구	중식	짜장, 짬뽕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뽕사부』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당사의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TICH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2	12	-	14	14	-	13	13	0
서울	8	8	-	10	10	-	8	8	-
부산	-	-	-	-	-	-	-	-	-
대구	-	-	-	ı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4	-	4	4	-	5	5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뽕사부』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12	-	-	-	12
2022	12	2	-	-	-	14
2023	14	1	-	2	-	13

6. 『뽕사부』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뽕사부』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연간 평균	·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 ¬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u> </u>
전체	13	1,210,933	19,605	2,501,213	33,734	585,125	6,936	13곳 산정
서울	8	1,279,786	20,792	2,501,213	33,734	585,125	6,936	8곳 산정
부산	-	-	-	-	ı	ı	-	-
대구	-	-	-	-	ı	ı	-	-
인천	-	-	-	-	-	ı	-	-
광주	-	-	-	-	-	ı	-	-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5	1,100,770	17,724	1,450,667	32,153	678,288	14,905	5곳 산정
강원	-	-	-	-	-	-	-	
중북	-	-	-	-	-	-	-	
출남_	-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_	
경북	-	-	-	-	-	1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

- ▶ 당사는 가맹점의 매출 현황은 POS 자료 등을 근거로 추정할 예정입니다.
- ▶ 당사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 당사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뽕사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뽕사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3개	892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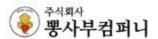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3년에 [뽕사부]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없습니다.

구분	수단	수단 기간		· - - - - - - - - - - - - - - - - - - -	비고	
丁 世	구단	기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포
합계	-	비공개	30,132	30,132	-	-
광고	소계	-	30,132	30,132	-	-
성고	-	-	-	-	-	-
판촉	소계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역삼점	서울 강남구 논현로 531 윤성빌딩	02-554-8002

귀하는 예치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서 작성일 날 [국민은행]에 예치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 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 후 기업→기업서비스→가맹금예치제도를 클릭한 다음 **뽕사부**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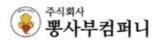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뽕사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설비의 종류, 영업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합계	33,000	-	-	-	-
가맹비	22,000	계약체결 후 - 3일 이내	영업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 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 멸성 대가	반환시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 약금을 공제 (계약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사후 가입비로 전환)
교육비	11,000	3월 이내	교육참가 전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 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인 기준. 추가 시 별도 금액 추가

2) 보증금액

▶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당사에서 수령하는 보증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합계	30,000	-	-	-
계약이행 보증금	30,000	계약 체결 후 즉시 지정된 예치기관에 예치	가맹금 미지급, 물류비 미결제 등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보증보험 대체가능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비고
합계	63,000	
 가맹비	22,000	
교육비	11,000	2인 기준
계약이행보증금	30,000	(부가세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 132m²(40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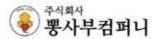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3.3㎡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합계	-	165,000	4,125	-	-	-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미정	110,000	2,750	계약 체결시	공사 전 계약취소	-
간판(싸인)	미정	11,000	275	계약 체결시	제작 전 계약취소	-
설비/집기	미정	33,000	825	계약 체결시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원·부재료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미지정)	11,000	275	계약 체결시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전기증설, 가스설치, 냉난방설치, 정수기설치, 창고설치, 철거공사, 정화조공사, 화장실공사, 급배기공사, 소방.방염공사, 조경공사, 의탁자 어닝, 외부샷시, 식기세척기, 기타유리, 통유리, 음식모형, 돌출간판, 각종인허가비용(실비) 등을 별도공사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3.3㎡ 기준(평)당 금칠십만원(₩700,000/부가세별도), 도면제공비로 금오백만원(₩5,000,000/부가세별도)을 가맹 계약 후 10일 이내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 보건증 발급 가능자	-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점포규모: 198m²(60평)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위 내역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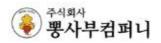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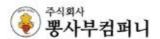
구 분	금 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특별/보수 교육비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 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 공하는 것이므로 교 육이 시작되면 반환 되지 않음.
광고비	실비	가맹본부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가 맹 본 부 의 귀 책 사 유 로 광 고 활 동 이 취소된 경우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판촉비	실비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가 맹 본 부 의 귀 책 사 유 로 판 촉 활 동 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 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 머지 비용	협력업체 (미지정)	VII. 가맹본부의 경 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환경개선 공 사 전 계약이 종료된 경우	환경개선 공사 이후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연 20%	가맹본부	면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 맹 본 부 의 귀 책 사 유 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 책사유로 물품 대 금, 계약서상의 의 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월 총 매출액의 1.65%	가맹본부	익월 5일 이내	가 맹 본 부 의 귀 책 사 유 로 계약이 종료 된 경우	가맹점이 영업지도 및 관리를 받기 위 해 가맹본부에게 지 급하는 소멸성 대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직전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



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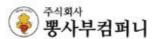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뽕사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혐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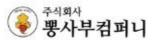
귀하가 운영하는 [뽕사부]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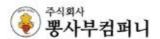
구분	금액	비고
가맹비	없음(양도인의 잔여기간 인정)	본 계약기간 중 을이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갑의 사전승인을
교육비	11,000	받아야 한다. 단,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 가맹비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을은 원활한 양도 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
계약이행보증금	30,000 (부가세 없음)	어 경우인에게 회사의 제도, 유학, 급신적 시합의구 등을 열명하는 등 회 대한 협조한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①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 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②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향보증금의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 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와 관련된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



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당사가 귀하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요구 또는 권유하는 거래대상물의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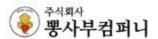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가맹본부가 정하는 품목과 공급업체 등은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있을 경우 가맹본부는 변경 1개월 전에 가맹사업자에게 통지한 후 시행하기로 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스버	포목	그경	다의	공급가격	(단위: 원)	구분(공급업체)
군간	古	πЧ	근귀	상한	하한	구군(중합합세)
				별첨 5 참조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뽕사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뽕사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뽕사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메뉴,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메뉴의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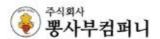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별첨 3] 참조		- 1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 2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 3회 위반 :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상품 · 용역에 대하여 고객(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한하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상품 · 용역 또는 당사가 공급하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만 19세 미만 고객	주류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	- 1회위반: 서면시정요구
경쟁업체 또는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 2회위반: 서면시정요구 - 3회위반: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해지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별첨	3] 참조	변동 사항이 있을시 서면 공문, 유무선, 이메일 및 포스를 통해 공지	2023년 기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 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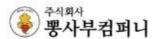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당사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도로사정의 변경이나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영업지역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



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 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경	§ 영업표지
중골인 입중 급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중식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종	뽕사부	해당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공항, 호텔 등)은 다른 영업지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가맹본부의 판매방식은 매장판매, 포장형, 배달형으로 구분하며 매장형 판매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매장의 규모와 상권의 형태에 따라 포 장형과 배달형 판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매장판매, 포장형, 배달형의 타입별로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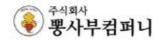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 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영업지역 변경 완료

▶ 동의를 얻는 방법 :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



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 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뽕사부』 영업표지 이미 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 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뽕사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u>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u> <u>통해 공급되는지 여부</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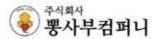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마	l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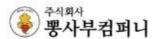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뽕사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 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 간 (계약만료일: D-day)
① 귀하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당사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당사가 귀하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귀하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당사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귀하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D,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	-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가맹사업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가맹사업법」상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가맹 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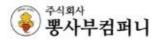
- ① 귀하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 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하는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계약서 제29조 제1항)

계약해지 사유

- 1. 가맹점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 거나 인쇄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상품 및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4.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가맹본부의 상품 또는 제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6. 가맹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7. 가맹점사업자가 제12조 가맹비등(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로열티)을 기한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8. 가맹점사업자가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9.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직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존속기간 동안 경업을 하는 경우
- 11. 가맹점사업자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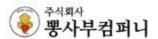
하는 경우

- 12.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13. 가맹점사업자가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 또는 제품을 변경·추가하거나 가맹본부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4.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 15. 가맹점사업자가 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6. 가맹점사업자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 17. 가맹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5일 이상 점포운영을 방 치하는 경우
- 18. 가맹점사업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19. 가맹점사업자가 제26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2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1. 가맹점사업자가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의 양도 및 가맹점을 위탁경영 하게 한 경우
- 22. 가맹점사업자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 23. 가맹점사업자가 제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 24.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 제29조 제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4조 제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또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한 것으로 결정



즉시계약 해지 사유

-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 ㅇ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 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 한 경우
 -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 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3 구 한 의 기조의 조스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동안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 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 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상속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2개월전 서면으로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업무위탁	불가능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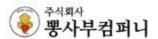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뽕사부]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뽕사부] 와 동일한 메뉴군으로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운영하는 업종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뽕사부] 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9:00~21:00 이상	주6일, 월 26일 이상, 또한 연속 3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문의: 가맹본부
	(7일 전 서면으로 사전승인 득한 후 휴업 가능)	(가맹본부)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후 11시 또는 12시부터 오전 2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 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특별한 제한 없음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직원 및 아르바이트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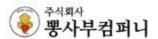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방문 또는 유·무선 등을 통하여 정기적/부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 당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별도로 공지합니다.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뽕사부]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丁正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담 결사	0177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상품광고 및 가맹점 모집광고	벼ㄷ	엽	행사 계획 공고→가맹점주들의 행사동의→ 행사 시작 (단, 광고 성격상 분담비율을 조정하여야 함이 상당할 경우 조정가능함)	- 대중매체 광고 -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 전체 가맹점사 업자의 50%이 상 동의가 있는
	가맹점 모집광고	ᡓ┸	됩긔		경우 시행
판촉행사	개별행사			행사 계획 공고→디자인 및 기념품 등 시안 제시→ 행사 시작	- 월별판촉행사 - 전체 가맹점사 업자의 70%이 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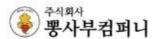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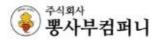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제31조 (손해의 배상)

- ①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이 제22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을"은 "갑"에 게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이 제 23조 4항 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갑"의 공급물품을 재판매한 경우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 (₩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을"이 제30조 계약종료 후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 일 당 <u>금 이십만원(\\(\pma\)200,000</u>)**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을"이 제15조 비밀유지의무 및 제16조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u>금 삼천 만원(\\(\overline{\overline</u>
- ⑦ "을"이 제32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가맹점을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을"이 제19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이 지정한 판매방식이나 유통채널을 위반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⑨ "을"의 귀책사유로 본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될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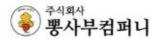
잔여계약 1년 미만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15%
잔여계약 1년이상 ~ 1.5년미만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30%
잔여계약 1.5년 이상	해지일 직전 12개월 "월 평균 매출액"의 50%
영업일이 1년 대	기만인 경우 : 최초 오픈일 부터 해지일 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 ⑩ 동조의 위약벌 규정은 "갑" 또는 "을"의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 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① "갑"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갑"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을이 판매 매출액의 허위 또는 누락으로 인하여 로열티를 불완전이행한 경우, 허위 또는 누락 매출액에 해당되는 로열티 금액의 10배를 갑에게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위약벌로 기존 미이행된 로열티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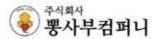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및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가맹금 지급	D-40~35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공사일정확인	D-34~3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내부 인테리어 및 간판 등)	D-29~19	
주방설비 입고	- 주방설비 및 집기류 입고 셋팅 - 초도 인쇄물 입고 등	D-18~14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0~7(3일)	
가오픈 리허설	- 오픈전 최종점검 및 리허설	D-3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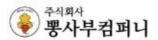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당사와 귀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가맹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취지 기타 상 관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2) 전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 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당사와 귀하의 협의에 의하여 전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당서 또는 귀하의 주소지나 점포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 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비용 항목	비용 비율		사유
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 성을 유지하기 어 렵거나 정상적인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교체비용을 제외한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통일성과 무관하게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 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 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부담액 중 바레하다 기간에 의 지급하지 아니하거나이미 지급한 주에는 환수가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본사 제작 관련매뉴얼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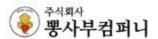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뽕사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W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뽕사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뽕사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고
개점 전 교육	일 8시간, 7일 교육	[11,000]	- 최초 계약 시 이수
수시교육	개별 산정	실비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특별교육	개별 산정	실비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
재교육	개별 산정	실비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재교육자 부담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교육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점이 지연되거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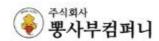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_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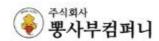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사업본부(02-569-666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설비/집기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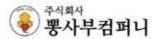
- ▶ 상기 품목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합니다.
- ▶ 상기 내역 중 공급업체 권유품목을 지정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 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상기 품목 내역은 가맹계약 체결 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별첨2. 원·부재료 리스트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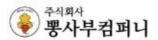
- ▶ 상기 품목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합니다.
- ▶ 상기 내역 중 공급업체 권유품목을 지정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달 받을 경우 반드시 당사가 정한 사양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가 정한 사양의 제품이 아닌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 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별첨3. 판매상품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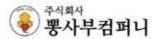
- ▶ 상기 품목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홈페이지, 이메일, 서면, 직원이 점포에 방문하여 별도 공지 등의 방법으로 재 안내합니다.
- ▶ 상기 품목의 가격을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 가맹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메뉴	가격
	짜장면	9,000원
	뽕사부짬뽕	12,000원
	짬뽕밥	12,500원
	매운짬뽕	12,000원
	매운짬뽕밥	12,500원
	순한짬뽕	12,000원
	순한짬뽕밥	12,500원
	육개장짬뽕밥	12,000원
식사류	크림짬뽕	14,000원
	치즈 토마토 볶음 짬뽕	14,000원
	치즈 토마토 볶음 짬뽕밥	14,000원
	치즈토핑 추가	1,000원
	볶음밥	10,000원
	군만두	8,000원
	탕수육	16,000원~30,000원
	가지튀김	13,000원
	마라바지락	20,000원
	유산슬	35,000원
	홍사러우	20,000원
	어향동고	30,000원
	깐풍기	19,000원~35,000원
주류	연태고량주	소 15,000원 / 중 30,000원 / 대 60,000원
	연태고량주 할인세트	중(250㎡)2병 40,000원/대(500㎡)2병 70,000원
	제임슨하이볼	7,000원
	연태하이볼	7,000원
	이과두주	6,000원
	공부가주	중 30,000원 / 대 60,000원
	칭따오맥주	8,000원
	맥주	5,500원
	소주	5,000원
	콜라/사이다/환타	2,500원



별첨4 최근 3년간 재무상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5 직전연도 공급가 상하한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